

2019. 1.18 개정
2019. 3.16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-약관-048호(2025.05.26)

『건설 하나로 통장』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“건설 하나로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1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
2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
3.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
4. E-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
5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수강 확인증 소지자

제 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 5 조 필수요건

이 예금에서 제공하는 금리 우대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
2. 이 예금에서 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3. 이 예금으로 급여^(주1)이체시

(주1) 급여 인정 기준 :

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
② 회사에 의한 ‘급여코드’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
③ 손님이 ‘급여일’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
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제 6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(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)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'원가일'이라 함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② 제 1항의 예금이자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.
- ③ 이 예금 원가일 또는 해지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제5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0.9%의 우대금리를 제②항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필수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- ④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 7 조 수수료 우대 서비스

- ① 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5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Ⅰ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Ⅰ을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Ⅰ 대상거래)

1.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2. 하나은행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- ② 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5조의 필수요건 1건 포함 아래 요건 중 2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Ⅱ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

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월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Ⅱ을 제공합니다.

1. 전월에 이 예금의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
2.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3. 전월에 이 예금으로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시
4.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결제 시
5. 전월에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
6.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

(수수료 우대서비스Ⅱ 대상거래)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

(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)

1. 이 특약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부터 적용합니다.
2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